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나514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나51482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1가단26438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우일

담당변호사 박응석

피고, 피항소인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

담당변호사 오정현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범주

변론종결 2024. 3. 19.

판결선고 2024. 4. 16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1가단26438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제1심공동피고 B 사이에, 피고 C와 2019. 7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은 167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, 피고 D와 2019. 7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은 1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C은 167,000,000원, 피고 D은 1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. 7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공동피고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·확정되었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고쳐 쓰는 부분】

- 제1심판결 중 ‘피고 B’을 모두 ‘제1심공동피고 B’로 고친다.
- 제3쪽 제6행 ‘가액배상’을 ‘원물반환’으로 고친다(원고는 당심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).
- 제3쪽 제7행 나.항 시작 부분에 아래 『』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.
『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

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).』

○ 제3쪽 제14행에 ‘갑 제11, 12호증’을 추가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범준, 판사 진희원, 판사 이형우